

서울특별시공고 제 2020-271호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(BRP)용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장

2020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(BRP) 용자지원 계획

□ 사업내용

-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개선과 생산까지 추진하기 위해 장기·저리 용자지원

□ 사업개요

- 지원규모 : 100억원
- 사업기간 : 사업 공고일 ~ 12월 최종심의까지(용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)
- 사업대상 : BRP(ZEB 포함)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건물
 - * BRP(Building Retrofit Project) :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시켜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
 - * ZEB (Zero Energy Building) : 에너지소비율 최소화하고, 에너지 생산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
- 지원사업 :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(지원항목 해당하는 성능에 한함)
- 지원조건 :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·타당성 검토 후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

□ 운영기준

- 용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
- 기타 관련조례,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“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” 준용

□ 지원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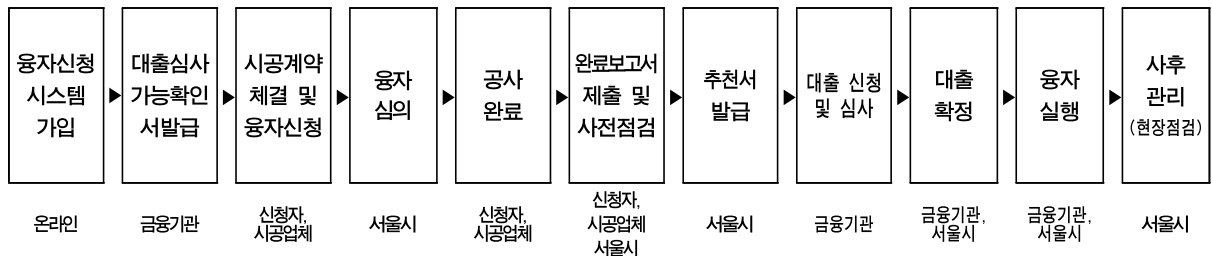
- 지원한도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
- 적용금리 : 연리 1.45%(고정금리),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
- 지원대상 : 사용승인일 3년 이상 경과한 건물
- 지원조건 : 서울시 용자심의를 통해 추천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
해당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조건

* ZEB 용자의 경우 서울시의 대출 확정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ZEB인증을 획득할 것

○ 용자심의

- ▶ 심의기능 : 용자신청 사업의 적합성·타당성 검토 및 용자 추천금액 결정
- ▶ 개최일정 : 2020.2월~11월까지 총 10회 개최
- ▶ 심의대상 : 당해연도 공사 계획 중이거나 완료된 신청 건
- ▶ 심의자문 : 외부 전문가(건축사, 한국에너지공단 등) 4명 내외

※ 지원절차



○ 지원대상 : 건물소유자, 건물세입자, ESCO사업자

○ ESCO사업자(Energy Service COmpany) 지원조건

- ▶ ESCO사업자는 「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」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
- ▶ ESCO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(거치 포함)을 설정할 수 없음

○ 지원한도

- BRP : 10백만원 ~ 2,000백만원
- ZEB (인증완료): 10백만원 ~ 4,000백만원, 우선지원

- 금융기관 : 우리은행, 산은캐피탈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농협, 중소기업은행
- 대여조건 :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(3년이내 거치 가능), 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

□ 신청방법

심의신청

- 인터넷용자신청 시스템(<https://brp.eseoul.go.kr/FUND/>) 통해 심의신청하며
2월 초 중 시스템 오픈예정(시스템에 심의일정 공지)
 - ※ www.seoul.go.kr → 분야별정보서비스 '환경' (중단 메뉴) → 서비스바로가기 '서울의 환경'
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용자신청
- 심의일정 : 월 1회(2~11월, 넷째주 수요일) 심의개최 예정이며
신청 건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
- 접수일정 : 매월 셋째주 금요일 18시까지
 - 용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(심의결과, 서류보완 등)은 온라인
(신청화면 로그인 후)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, 휴대폰 SMS알림서비스 제공
 - ※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,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
 - ※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
 - ※ 인터넷신청이 어려울 시 서울시 기후대기과, 해당 자치구 환경과 방문하여 문의
- 심의신청 구비서류(용자신청 시스템에 PDF파일로 업로드)

구분	공 통	비 고
건 물	대출심사가 가능 사전확인서(별지1)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지원에 대한 서약서(별지2) 시공도면, 공사 계약서, 공사원가계산서 및 상세내역서 완료보고서(공사완료후 신청 시) 시험성적서(단열재, 차열도료 등 시공 시) 매매계약서·임대차계약서(해당 신청자만) 건축물대장, 사업자등록증(시공업체) 시공업체 건설업등록증(해당 공사건만)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	

대출신청

- 공사완료 후 서울시 사전점검 및 확인
- 추천서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
 - '19년 추천 건도 대출신청 가능하며 해당금융기관별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
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(다만, 2020년 상반기 까지 대출신청 분에 한함)

○ 금융기관 별 구비서류

구분	금융기관	구비서류
건 물	개별 선정	신분증, 용자추천서 완료보고서(별지3) ※ 담보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

□ 사업설명회 개최

- 일 시 : 2020. 2. 6.(목) 10:00
- 장 소 :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(중구 덕수궁길 15)
- 주요내용 :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지원 안내

□ 유의사항

- 용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용자 실행되므로 금융기관 대출부적격자는 서울시에서 용자 추천되었어도 지원이 불가함.
-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에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용자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로지정 하지 않음.
- 공사의 대금지급, 사후관리,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 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.
- 용자신청자는 대출 신청과 함께 사업완료보고서를 용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용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신청자는 용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용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, 시공사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.
- 용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용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- 서울시, 정부,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.
- 융자심의 전 시공완료여부,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의 비교 등을 위해 현장방문을 요청 할 수 있음.
- 융자지원 내용, 조건,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함.
- 융자지원 내용, 조건,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·저리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기죄로, 위계로써 이 사업 대출 추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, 이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음.
- 융자지원 내용, 조건,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최대 2년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, 해당 시공업체와 계약 한 건은 최대 2년간 융자심의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.

※ ‘목적 외 사용’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,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.

-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(ESCO사업자 포함)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

위 반 내 용	조치내용
1)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예) 해당업체가 서울시 등록업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홍보물 제작	2년간 지원제외
2)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	1년간 지원제외

-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,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융자지원 대상항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함.
- 에너지효율화 공사 진행 시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.
-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,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.
-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「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」을 준용 함.

□ 에너지절약 설비 항목

○ 건축부문

- 단열창호 :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~3등급의 창세트
- 단열덧창 : 기존 설치된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~3등급의 창세트
- 내·외벽 단열재
 - (1)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⇒ 신축 단열기준 적용
 - ▶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
 - (2)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
 - ▶ 내단열 : 열관류율 1.33W/m²K(열전도율 나등급+ 두께 30mm해당) 이하
 - ▶ 외단열 : 열관류율 0.8 W/m²K(열전도율 나등급+ 두께 50mm해당) 이하
 - ※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
 - ※ 마감비용은 단열재의 철거, 설치,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의 100% 이하까지 추천

- 냉방용 창유리필름 :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(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)에 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
- 차열도료(Cool Roof) :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(시험방법 ASTM C1549, E903, E1918)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.65이상인 도료에 한함

○ 기계부문

-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
- 냉·난방 효율향상공사(보일러, 냉온수기, 냉동기,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)
 - ※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,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·난방 권장
- 폐열회수설비(열교환장치, 히트펌프 등). 회생제동장치(엘리베이터)
- 건물자동화제어장치 : 자동제어,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등

○ 전기부문

-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(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)
-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(고효율 인버터,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)
- 수변전 설비(고효율 변압기)
-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(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고확인) 설치
 - ※ 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% 이상 교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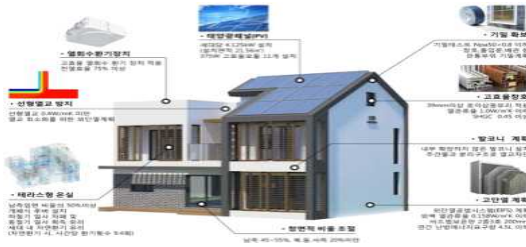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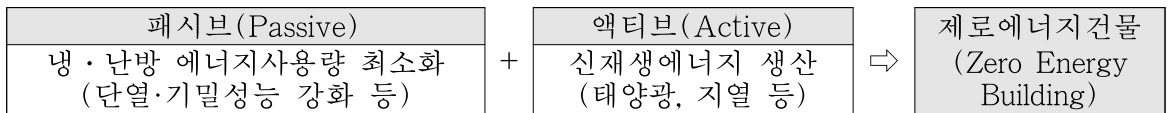
○ 신재생에너지 등

-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(수소연료전지, 지열, 태양열 등)
 - ※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사업비 50%이상 투자 시 지원하며,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
- 에너지진단비, 절수설비 및 절수기(에너지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), 벽면녹화, 미활용에너지 이용설비
- 공인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 효과 10%이상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(고효율기자재 등) 및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의 세부내역 항목 등

○ 건물을 ZEB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우선 지원

- 제로에너지건물(Zero Energy Building)

- ▶ (개념)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(패시브), 신재생에너지 생산(액티브)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최소화



- ▶ (인증제도) 에너지효율등급 1⁺⁺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(BEMS 등)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

에너지효율등급	에너지자립률*	제로에너지등급
1 ⁺⁺ 등급* 이상 (최고1 ⁺⁺⁺ ~최저7등급) *최저 7등급 대비 80% 절감	100% 이상인 건축물	1등급
	80 이상 ~ 100% 미만인 건축물	2등급
	60 이상 ~ 80% 미만인 건축물	3등급
	40 이상 ~ 60% 미만인 건축물	4등급
	20 이상 ~ 40% 미만인 건축물	5등급

* (에너지자립률) : 1차에너지 생산량 / 1차에너지 소비량(소요량+생산량)

끝.

[별지 1]

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

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용자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.

- 아 래 -

◆ 신청자 성명 :

◆ 시공업체 명 :

◆ 신청부문

건 물		
소유자	세입자	ESCO사업자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◆ 시공현장 주소 :

※ 유의사항

- * 동 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,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* 동 확인서는 대출심사신청이 아니며, 용자추천 받은 후 대출심사신청을 위해 재방문 하여야 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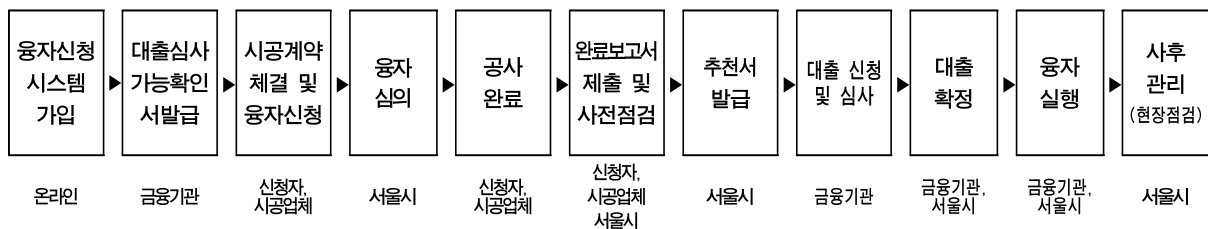
은행 지점

(TEL :)

지점장 : (인)

※ 참고사항

* 용자지원 절차



* 지원 절차, 지원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(기후대기과 ☎2133-3578)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2]

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지원에 대한 서약서

신청인	성명	
	주소	
	연락처	

시설개설행	<input type="checkbox"/> ZEB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열창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열재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일러 <input type="checkbox"/> LED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조시스템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열회수설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-------	--

① 용자신청자는 대출 신청과 함께 사업완료보고서를 용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**서울시 또는 용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**

②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,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**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**

③ 공사의 대금지급, 사후관리,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**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**

④ 용자지원 내용, 조건,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용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해당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함

⑤ 용자지원 내용, 조건,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·저리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**사기죄**로, 위계로써 이 사업 대출 추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**공무집행방해죄**로, 이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**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음**

⑥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「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」을 준용 함

위 사항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신청인

서명 또는 인

서울특별시시장 귀하

[별지 3]

완 료 보 고 서

1. 신청현황

신청인	신청자		생년월일	
	사업체(법인)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신청자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유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ESCO사업자		
시공업체	대표자		담당자 연락처	
	사업체(법인)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종목			
용자신청내역	용자대상 건물명			
	소재지	(전화)		
	총사업비	백만원	사업내역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열창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열재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일러 <input type="checkbox"/> BEMS <input type="checkbox"/> LED <input type="checkbox"/> 태양광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조시스템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열회수설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에너지진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	용자신청액	백만원		
	상환기간	년(8년이내)		
	거치	년(3년이내)		
	용자취급은행	<input type="checkbox"/> 우리은행(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은행 (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하나은행(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은캐피탈 (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농협은행(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은행(지점)		

2. 현장사진

시설개선 장소 및 내용	
사업 전	사업 후

※ 시공부분이 다수일 경우 시공항목별 사업 전·후의 사진 별첨가능

3. 구비서류

- 세금계산서
 - 준공검사필증(해당 사업만 제출)
 - 납품확인서(거래내역서)
 - 참여 업체가 시공만 했을 시 “참여업체, 제조업체간 납품확인서”
 - 참여 업체가 제조·시공 했을 시 “참여업체, 신청자 간 납품 확인서”
- ※ 납품확인서(거래내역서)는 항목별 모델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

2020 년 월 일

시공업체 대표자 : 서명 또는 날인
용자신청인 : 서명 또는 날인

서울특별시장 귀하

[별지 4]

○ 자치구 BRP담당자 연락처

연번	기관명	부서명	담당팀	전화번호
1	종로구	환경과	녹색에너지팀	2148-2476
2	중구	환경과	녹색에너지팀	3396-5634
3	용산구	맑은환경과	녹색성장팀	2199-7652
4	성동구	맑은환경과	녹색에너지팀	2286-6359
5	광진구	환경과	에너지관리팀	450-7335
6	동대문구	맑은환경과	녹색에너지팀	2127-4655
7	종량구	맑은환경과	녹색성장팀	2094-2455
8	성북구	환경과	에너지관리팀	2241-3023
9	강북구	환경과	기후환경정책팀	901-2595
10	도봉구	환경정책과	에너지팀	2091-3222
11	노원구	녹색환경과	지속가능팀	2116-3201
12	은평구	맑은도시과	에너지관리팀	351-7643
13	서대문구	환경과	에너지관리팀	330-1902
14	마포구	환경과	에너지관리팀	3153-9284
15	양천구	맑은환경과	지속가능팀	2620-4867
16	강서구	환경과	에너지관리팀	2600-4042
17	구로구	환경과	에너지절약팀	860-2888
18	금천구	환경과	에너지관리팀	2627-1532
19	영등포구	환경과	환경행정팀	2670-3460
20	동작구	맑은환경과	에너지정책팀	820-9738
21	관악구	녹색환경과	녹색에너지관리팀	879-6282
22	서초구	푸른환경과	에너지관리팀	2155-6459
23	강남구	환경과	녹색에너지팀	3423-6232
24	송파구	환경과	기후대응팀	2147-3265
25	강동구	맑은환경과	기후변화대응팀	3425-5945